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35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서영교 · 박희승 · 이연희
박홍배 · 김종민 · 안호영
김남근 · 박홍근 · 허영
윤준병 · 정준호 · 이해식
박지원 · 한정애 · 이수진
조계원 · 이성윤 · 김문수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관계 외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임.

그런데 전자의 경우 「민법」의 친생추정 법리에 따라 법률상 남편과 모가 출생신고의무자가 되나, 법률상 남편은 자기 자녀가 아니므로 출생신고를 할 유인이 없고, 모 역시 현재의 가족관계의 유지 등에 대한 우려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후자의 경우에는 모가 출생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음. 즉, 현행법상 어느 경우에도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과거 헌법재판소가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2023.3.23. 선고 2021헌마975), 이 취지에 따라 2023년 6월 현행법에 출생통보제(제44조의3 등)가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 무엇보다 보호자인 생부가 여전히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친생추정의 법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출생자가 제3자에 의한 친생추정을 받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 등으로 출생신고에 모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5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모가”를 “부 또는 모가”로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혼인”을 “제46조제2항에 따라 혼인”으로, “한”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 및 제2항에”를 “각 호에”로 한다.

1. 출생자가 「민법」 제844조에 따라 제3자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아니함을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
2.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등의 장애가 있어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어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출생한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신고 의무자) ① (생략)	제46조(신고 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u>모가</u> 하여야 한다.	② ----- <u>부 또는 모가</u>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u>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u> <u>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u> <u>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u> <u><신 설></u>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혼인-----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단서 삭제>
	1. 출생자가 「민법」 제844조에 따라 제3자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아니함을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증

<신 설>

<신 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

명하는 경우

2.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등의 장애가 있어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어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삭 제>

<u>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u> ③ 가정법원은 제1항 <u>단서</u> 및 <u>제2항에</u>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③ -----<u>각 호에</u> ----- -----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